



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기본정신 및 실천지침

2010. 4. 9



Hyolim Group



윤리경영

윤리 경영이란 효림그룹내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“윤리”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공통된 행동방식으로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활동입니다.

기본정신

-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모든 행동의 기초가 되는 사고방식입니다
- 사회환경 및 경영환경이 변할지라도 기본정신은 변하지 않으며, “나”와 “회사”와 관련한 모든 사람들에 대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우리 스스로의 약속입니다.

행동 지침

- 회사 경영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게 되는 모든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적절한 행동 지침입니다.
- 어떠한 상황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“반드시 준수” 해야 하며 “하지 말아야” 하는가에 대한 유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
- 업무수행 중 발생하게 되는 여러 상황 중, 행동지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있다면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판단과 함께 윤리담당 부서인 회사별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여 행동지침을 구체화 해 나갈 것을 바랍니다.



기본정신

1. 고객과의 믿음

-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에게 감사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
- 모든 고객에게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
-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, 성능, 사양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고객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, 표현을 하지 않는다

2. 임직원과 경영진간의 믿음

-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임직원과 경영진이 상호 신뢰한다
- 경영진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
-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거래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개별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

3. 협력사들과의 믿음

- 최상의 경영 동반자를 선택하기 위해 공정하고 공평하게 심사하여 선정한다
-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
- 어떠한 명목으로도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



기본정신

4. 사회와의 믿음

-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
- 모든 법규와 규범, 공공질서를 충실히 준수한다
-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인식하여 사회봉사 및 재난구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

5. 동료들과의 믿음

- 공사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회사 재산이나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상호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다
- 성적희롱이나 사회적,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
- 기본 에티켓과 직장예절을 준수하여 밝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스스로 조성한다



행동지침

1. 협력 회사와의 부정 행위를 일체 금지함

- 모든 구매행위는 오로지 회사의 최대 이익을 기준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. 협력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적합성, 가격, 납기, 및 품질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반드시 2개 업체 이상의 비교견적을 실시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상급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한다
- 명절, 기념일등에 현금, 상품권, 현물, 회원권을 수수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된다, 또한 협력사에 본인 및 상급자의 개인 집 주소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개인적 사용 비용의 대납 강요 행위, 경조사 명목으로 사전에 연락하여 경조비를 받는 행위도 금지된다.
- 택배를 이용하여 집으로 발송되거나 부재시 사무실로 배달된 선물 등에 대해서는 주소가 파악되는 한 돌려보내도록 하고, 되돌려 줄 수 없는 경우 관리부서에 통보한 후, 처리 문제에 대해 협의토록 한다
- 협력사와 상담 후 중식 및 식사 시에는 회사 경비로 처리하거나 각자 비용을 계산하도록 하며 협력사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사외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, 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안되며, 정중히 거절하여야 한다.
-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불가피하게 식사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인정 가능한 금액한도 내에서 가능하며, 그 다음 접대는 반드시 본인이 지불한다



행동지침

2. 회사 자산을 보호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여야 함

- 전 임직원은 자신에게 맡겨진 회사 자산을 손실, 피해, 오용 혹은 도난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다. 자금, 제품이나 컴퓨터 등의 자산은 오로지 사업 및 업무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
- 단, 제품 샘플의 경우, 연구목적이나 공익목적, 사내 외 행사를 위해 사용, 출연할 수 있으며 회사의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득한 후에 사용한다.
- 모든 기밀정보는 적절하게 분류, 표시되어 안전하게 보관 되어야 하고 업무수행을 위해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사람들만이 입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. 모든 임직원은 기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하며 언론으로부터의 모든 요구는 전문적이고 일관된 조치를 위해 관리부서로 창구를 일원화 해야 한다.
- 모든 임직원들은 개인 신상기록 및 회계기록,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정직하고 정확하게 기록 해야 한다. 특히 모든 회계 전표 기록과 계정은 거래 내용과 사항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조작적 기입은 허용되지 않는다
- 비용지불은 사전에 보고된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지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 할 수 없다. 또한 목적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이 집행되었을 때, 관리부서에서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



행동지침

3. 회사 내 임직원 상호간의 행동

- 사내 임직원간에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경제적 이익이나 선물제공을 하여서는 안되며 상호간 금전거래 행위를 금지한다.
- 회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우량 업체 발굴 소개 및 인력 소개는 가능하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당한 알선 및 청탁행위를 지양한다
- 부서 내 혹은 사내 동료간 이해증진이나 업무협조를 위해 회식을 실시할 수 있으며, 부서장의 구두승인 후 예산내에서 실시한다. 회식의 비용이 고액이면서 유흥업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, 절대 허용 불가한다.
- 회사의 윤리경영의 기본정신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, 직무유기 시 익명으로 인사부서나 관리부서에 제보함으로써 사전에 부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.



윤리규범 실천지침

1. 용어의 정의

- 금품 : 금전(현금, 상품권, 이용권 등), 물품 등 경제적 이익
- 향흥 : 식사, 주연, 골프, 공연, 오락 등
- 이해관계자 : 본인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임직원 등의 개인과 고객사, 공급사, 계열·협력사, 제 단체
- 통상적 수준 : 다른 임직원 또는 일반인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 타당한 수준으로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할 수 있는 정도

2. 금품

- 업무와 관련하여 어떤 명목으로도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됨. 다만, 2만원 이내의 통상적 수준의 기념품은 제외
-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반환해야 함. 반환이 곤란한 경우 직속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함



윤리규범 실천지침

3. 향응 접대

-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 접대를 수수해서는 아니 되며, 정중히 거절해야 함
-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접대를 수수한 경우에는 인당 3만원 이내의 일반적인 범위 내의 식사 등의 접대 외에는 즉시 직속상사에게 신고하여야 함

4. 경조금

- 이해관계자 및 직원 상호 간에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됨

5. 금전거래

- 이해관계자와 금전대차, 대출보증, 부동산 임대차 등 금전거래를 해서는 안됨



윤리규범 실천지침

6. 행사 참조

-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회사가 지원하는 행사 시 이해관계자로부터 참조금품을 받아서는 안됨
- 행사에 필요한 차량, 장소, 용역 등 편의를 제공받은 것도 참조금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에는 즉시 직속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함

7. 예산 재원의 부당한 사용

- 접대비, 회의비, 업무추진비 등 회사의 예산 재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
- 경비 집행 시 법인카드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, 예산의 목적과 위임전결규정, 법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여야 함

8. 윤리규범 실천지침 위배

- 윤리경영 실천지침 위배로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/금전적 책임은 당사자 개인 의무임